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9일, 박해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4.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  
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해철의원)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매년 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100여건에 이르는 등 위법한 가설 건축물 등을 숙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여건 향상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석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여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주거시설 건립을 위한 초기 시설 지원 비용 3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공모·선정할 계획이므로, 개정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의<sup>1)</sup> 내역 사업을 법률에 명시한 것임.

다만, 현재 같은 세부사업 중 ‘외국인근로자지역정착지원’이라는 내역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체류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비용 18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기에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에 대한 다음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 <수정의견>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신설> | 제22조의3( <u>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u>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u>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 제22조의3( <u>자치단체에 대한 지원</u>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u>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

1) 사업코드 3051-308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찬반토론의 요지

생 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부대의견

없 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10. 기타사항

없 음